

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19년 12월호

1. 법률

-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- 나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금융투자업규정
- 나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
- 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다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라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마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K-OTC PRO 운영 시행세칙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- 다.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
- 라.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

1. 법률

-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- 나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1. 법률*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2019/11/26 개정·2020/5/2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 자산운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(제182조의2)

- 국내에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
 -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일 것
 - 자기자본, 임원 및 운용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것
 -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 등 교차판매협약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
-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변경등록 하여야 함

□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(제253조 제4항)

- 제182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,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
-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□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(제279조 제2항)

-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- 이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함
 -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
 -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·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

[아시아 펀드패스포트(Asia Region Fund Passport·ARFP)]

-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해당 외국에서 펀드를 판매하려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가능
- 아시아 펀드패스포트(Asia Region Fund Passport·ARFP)가 시행되면 특정 회원국(한국·일본·태국·호주 등)에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더 쉽게 등록·판매할 수 있음
 - * ARFP는 한국과 호주, 뉴질랜드, 일본, 태국 등 5개국의 펀드 교류제도.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펀드에 대해 별도의 규제 없이 각국에서 교차판매를 허용

나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(2019/11/26 제정·2020/8/27 시행)¹⁾

1) 제정 이유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
 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금융업
 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만 존재하여 규제의 강제성 부족으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 등이 제기

[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」의 제정 의미]

- P2P 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제거
-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
- 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·차입자 보호제도등을 통해 P2P 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 구축

1) 제32조, 제33조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

2) 주요 내용

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정의(제2조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,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

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(제5조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
 - 신청인이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
 - 2.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
 -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,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
 - 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
 - 임원이 본 법의 제6조 제1항에 적합할 것
 -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(제18조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말한다)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
 - 대주주(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,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 -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-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(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)(제55조)

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(제10조)

- 이용자가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
 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
 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
 - 누적 연계대출금액 및 연계대출 잔액
 -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체계
 -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
 -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
 - 채무불이행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

- 투자금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등 영업 중단 시 업무처리절차 등

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(제11조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, 이자율의 상한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, 이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함
-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들을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금지

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관련 준수사항(제12조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정함
 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100분의 8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허용

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광고(제19조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광고를 함에 있어 과잉·은폐·축소·허위·비방 광고, 원금보장·확정수익 등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

□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(제22조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함
 - 대출예정금액, 대출기간, 대출금리, 상환일자·일정·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
 - 차입자에 관한 사항 및 연계투자의 위험성
 - 수수료·수수료율,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·세율, 연계투자 수익률·순수익률,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등
- 연계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됨

□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(제26조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을 고유재산 등과 구분하여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함

□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(제28조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함

□ 손해배상책임(제31조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법령·약관·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

□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(제32조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을 할 수 있는 대출한도와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한도를 정함
 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음

□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(제35조)

-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함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fi.re.kr)

-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 - 가. 금융투자업규정
 - 나.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금융투자업규정 (2019/11/21 개정·시행)¹⁾ 개정 이유

- 개인투자자 요건을 개편하고,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(K-OTC Pro)을 개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19.8.20)에 따른 세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1) 주요 내용

-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개편(제1-7조의2)
 - 개인전문투자자 관련 자료를 심사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 범위를 자본시장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위험관리 평가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업자로 설정(제1-7조의2 제1항)
 - 금융투자상품 잔고 산출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(제1-7조의2 제2항)
 - A등급 이하 사채권 및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, 지분증권, 파생결합증권, 증권형 펀드 및 사모펀드
 - 소득액 요건(제1-7조의2 제3항)
 - 본인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요건 충족
 - 자산기준(제1-7조의2 제4항)
 - 총자산가액 중 거주 부동산 가액(임차 부동산 거주시 임차보증금) 및 총부채(거주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부채 제외)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요건 충족
 -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(제1-7조의2 제5항)
 -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·감평가·변호사·변리사·세무사, 투자운용인력 등 시험 합격자,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 충족
- 전문투자자간 장외거래 관련 업무방법(제5-2조의2)
 - 장외매매거래 관련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하고, 장외매매거래의 절차·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도록 규정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-8조 제1항에 따라 서류를 협회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-7조의2 및 제1-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

나.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2019/11/21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 산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,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(K-OTC Pro) 개설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K-OTC Pro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설정(제2-2조의3 제2항)
 -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무집행사원 추가(제2의3호)
 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상법상 유한회사·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추가(제2의4호, 제2의5호)
- 코넥스 상장기업 유상증자시 신주가격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(제5-18조)
 -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기준주가에 10% 할인율을 적용
 -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이고,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거나,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
 - 일반공모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가격결정 관련 규제를 면제(제5항)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
- 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다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라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마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(2019/11/20 개정·2019/12/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(Repurchase Agreements, RP) 활성화를 위해 RP시장 특례참가자의 시장 참가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, RP시장 거래대상채권 확대 및 RP시장 담보채권의 대체제한을 폐지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장내 RP시장 특례참가자의 시장 참가에 필요한 근거규정 정비(제3조 제4항, 제72조 제4항, 제110조 제2항)
 - 정부, 한국은행, 증권금융 및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(회원관리규정 제41조 제2호 각 호)를 장내 RP시장의 회원으로 의제
 - 이 중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는 매매거래의 청산·결제를 위해 매매전문회원으로 간주
 -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내용은 지정결제회원에게도 통지
- 거래대상채권 확대(제61조 제1호)
 - RP 거래대상채권을 국고채권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등으로 확대
 - 그 외 거래대상채권(통화안정증권,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신용평가등급 AA이상 채권)은 현행과 같음
- RP담보채권 대체제한 폐지(제69조 제1항)
 - 모든 RP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중 담보 대체가 가능하도록 허용
 - RP시장에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동의를 얻어 담보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변경하는 것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19/11/28 개정·2019/12/2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채권시장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호가 수량·가격 입력 한도를 조정하고, 시스템 장애 발생시 회원사 신청에 따른 호가 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등 호가 관련 제도를 정비

2) 주요 내용

- 호가수량 한도 축소(제14조 제1항 제4호 가목, 제79조 제6항)
 - 개인 위탁호가의 경우 최대 호가수량 한도를 200억원으로 축소
 - 상장잔액이 2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잔액 적용
 -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경우 개별경쟁매매는 호가수량 한도를 1,0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고, 협의매매 및 신고매매에 대해서는 호가수량 한도를 9,990억원으로 조정
 - 상장잔액이 1,0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잔액 적용
- 호가가격 입력한도 조정(제79조 제7항)
 - 국채전문유통시장 거래대상종목 중 지표종목에 대하여 가격변동성을 고려하여 연물별로 호가가격 입력한도를 차등화
 - 지표 3·5·10년 만기 국고채: 20%를 초과하는 매수호가 또는 미달하는 매도호가 입력 불가(그 외 종목은 현행과 같이 30% 유지)
- 채권 호가취소제도 도입(제82조 제5항)
 - 국채전문유통시장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사의 신청에 따른 호가 취소 근거 마련
- 주식 시장조성자제도 관련 용어 및 조문정비(제31조의12, 제31조의16, 제31조의17, 제31조의18, 제31조의19, 별표 2의2, 별지 제2호의7)
 - 시장조성자계좌의 '순매수잔고'를 '보유잔고'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, 시장조성자가 차입하여 보유한 수량은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변경
 - 시장조성종목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평가결과가 개선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시장조성대상으로 유지하는 유예기간 부여 근거를 마련

1) 제99조의17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

□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항목(제12조의2)

- 회원채무증권단말기를 이용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호가 적합성 점검항목 적용 예외 근거 마련
 - 회원채무증권단말기란, 채무증권 매매와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회원사가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소시스템과 연결한 단말기

□ 수탁의 방법(제109조 제7항)

-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 회원시스템 보안장치 경우 예외
 -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회원채무증권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을 수탁 또는 처리하는 경우 회원시스템 보안장치 경우 의무 예외 명확화

다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19/11/28 개정·2020/1/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코스닥 시장조성자제도 등과 관련하여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코스닥 시장조성자제도 관련 용어 및 조문정비(제12조의10, 제12조의14, 제12조의15, 제12조의16, 제12조의17, 제33조, 별표 5, 업무서식 6의6)
 - 시장조성계좌의 '순매수잔고'를 '보유잔고'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, 시장조성자가 차입하여 보유한 수량은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변경

라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19/11/27 개정·2019/12/2 시행)²⁾

1) 개정 이유

- 환금성 및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에 대해 증거금 납입한도를 설정하여 담보자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
- 장중추가증거금 도입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위임한 장중추가증거금 산출·부과 및 예탁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

2) 제46조의5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

2) 주요 내용

□ 대용증권 및 외화의 예탁한도(제46조의5)

- 회원이 현금에 같음하여 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 및 외화를 현금성자산과 비현금성자산으로 구분하고, 비현금성자산에 대해서는 예탁한도를 설정
 - 「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」 제75조의2 제1호·제2호 나목·제3호에 해당하는 대용증권

□ 장중추가증거금의 산출 및 부과(제46조의13 및 별표3)

- (산출시점) 장개시 후 1분이 되는 시점 및 장개시 후 1시간마다 장중거래증거금 산출 (장종료 직전은 제외)
- (부과요건)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200의 가격 변동률이 코스피200선물 거래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이고, 회원별 장중거래증거금이 예탁총액의 100분의 120 이상인 경우
- (부과시점)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에 장중추가증거금 부과
- (부과금액)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의 장중거래증거금에서 부과시점의 예탁총액을 차감한 금액

□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(제46조의14)

- 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부과 사실을 통지한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장중추가증거금을 거래소에 예탁

□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(제46조의15)

- 거래소는 부과시점으로부터 30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이 부과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탁총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 부과를 해제할 수 있음

마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19/11/27 개정·2020/3/23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환금성 및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에 대해 증거금 납입한도를 설정하여 담보자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비현금성 담보자산 납입한도 설정(제91조)

- 회원이 현금에 같음하여 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, 외화 및 외화증권을 현금성자산과 비현금성자산으로 구분하고, 비현금성자산에 대해서는 예탁한도를 설정
 - 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」 제112조의2 제1호·제2호 나목·제3호에 해당하는 대용증권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4. 금융투자협회

- 가. K-OTC PRO 운영 시행세칙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- 다.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
- 라.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

4. 금융투자협회*

가. K-OTC PRO 운영 시행세칙 (2019/11/21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19.8.20.), 금융투자업규정 개정(2019.11.20.) 및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(2019.9.16.)에 따라 관련 제·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거래대상 조문 정비(제1조)
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거래대상을 '비상장 주권 등'에서 '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'으로 조문 정비

□ K-OTC PRO 대상종목(제3조)

- 지분증권에 한하던 것을 지분증권 및 이에 준하는 전자등록된 지분증권으로 개정

□ 투자자회원 범위 조문 정비(제11조 제1항 제1호)

- 세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자자회원을 삭제하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자회원의 대상을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조문 정비

□ 자금조달 신청자격 정비(제11조 제1항 제2호)

- 자금조달 신청 자격 중 적격엔젤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 실적 인정부분을 제외하고 법·규정상 근거가 있는 전문엔젤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 실적만 인정
 - 전문엔젤투자자: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가목(8), 전문엔젤투자자관리규정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19/11/20 개정·2019/12/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의 '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'(2019.5.30)에 따라 파생상품 사전교육·모의거래 의무 이수시간 변경 및 재이수 요건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개인투자자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파생상품 사전교육·모의거래 의무 이수시간 변경 및 재이수 요건 폐지(제2-5조의3)
 - 개인일반투자자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·모의거래 시간을 단축
 - 사전교육 (기존) 20시간(옵션매도시 추가 10시간) 이상 → (개정) 1시간 이상
 - 모의거래 (기존) 50시간 이상 → (개정) 3시간 이상
 - 재이수 요건 폐지

다.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(2019/11/26 개정·2019/12/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의 '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'(2019. 5. 30)에 따른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
 - 관련하여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를 위한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(시행일 2019. 12. 2)

2) 주요 내용

- 기본예탁금
 - 전문투자자 기본예탁금 폐지 명시
 -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 명시
 - 선물(변동성지수선물 제외), 옵션매수: 1,000만원 이상
 - 그 외 모든 거래: 2,000만원 이상
-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간 축소 등
 - 사전교육 (기존) 20시간(변동성지수 선물거래, 옵션매도시 추가 10시간) → (개정) 1시간 이상
 - 모의거래 (기존) 50시간 이상 → (개정) 3시간 이상

라.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(2019/11/27 개정·2019/12/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수탁거부 관련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및 「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」, 기본예탁금 면제 대상 계좌 관련 「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 - 금융위·금감원 등이 발표한 ‘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’(2019.5.30)중 파생상품시장의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과제로 개인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거래시 파생상품 교육·모의거래과정 이수시간 축소 및 전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 추진

2) 주요 내용

- 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시간 축소 등에 따른 조문 정비(제6조)
 - 교육 및 모의거래 과정 이수시간 축소 등 진입규제 합리화에 따른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
 - 수탁거부 사유 중 협회 규정 및 거래소 규정 개정사항 반영(제6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2호)
- 기본예탁금 예탁의무 면제 대상 계좌 확대(제7조)
 - 전문투자자(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)가 개설한 파생상품계좌에 대한 기본예탁금 예탁의무 면제를 반영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